

10차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연장)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2차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사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사업
- (지원규모) 특구사업자당 최대 6,00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 ① 사업화 지원 :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16.67%이상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울산 규제자유특구 내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지정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55호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특구 내 소재기업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유사 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자(기업)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정보시스템 사전조회에서 제기된 문제기업 및 기타 서류상으로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 한도) 동일 프로그램 내 세부 지원항목의 복수 신청과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함. 단,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당 총 지원금액은 최대 6,000만원 이내임.

* (동일 프로그램 내 복수 신청) 시제품 제작 2,000만원 + 시험·분석 1,000만원 = 총 3,000만원
→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지원」 한도인 3,00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 시험·분석 3,000만원 + 마케팅 2,000만원 = 총 5,000만원
→ 각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및 기업당 총 지원한도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지원	- 기자재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지원 - 실증 R&D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평가·분석 지원 가능	- 최대 3,000만원 /기업당 - 기업부담금 16.67% 이상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지원	- 특허 출원·등록, 특허맵 작성, 특허정보 조사, 상표 등록 등 지원 - 사업화 마케팅 지원(시장분석,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 최대 2,000만원 /기업당 - 기업부담금 16.67% 이상
	맞춤형 1:1 기술애로 및 경영진단 컨설팅	-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애로 컨설팅 - 마케팅, 지식재산권, 수출입 등 사업화 과정의 경영진단 컨설팅 ※ 개인 전문가 활용 시 TP 직접 지급(기업부담금 없음)	- 최대 1,000만원 /기업당 - 기업부담금 16.67% 이상

※ 모든 프로그램별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한도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이 전액 부담

※ 기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각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결과 평가 및 회계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수혜기업이 전액 부담함

※기업부담금 산정 예시

-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지원의 경우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가능

구분	금액 (원)	비고
총 소요비용	39,600,000	- 공급가액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 3,600,000원
TP 지원금	29,998,800	- 공급가액의 83.33% 이하
기업부담금	6,001,200	- 공급가액의 16.67% 이상
기업 총 부담액	9,601,200	- 기업부담금 6,001,200원 + 부가가치세 3,600,000

○ (지원방법)

-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울산TP·수혜기업·공급기업(관)) → 사업 수행 및 결과물 제공 → 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납부 및 증빙서류 제출 → 결과물 검수 및 사업비 정산 → 지원금 지급(공급기업(관))

○ (지원절차)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며,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관)의 과업 수행역량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
- 공급기업(관)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수혜기업에 제공
- 수혜기업은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관)에 납부하고 이체확인증, 결과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울산TP에 제출
- 지원금은 결과물 검수 및 사업비 정산 후 울산TP가 공급기업(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서면평가

○ (평가항목)

구 분	위원구성	평가항목
서면평가	- 외부 전문가 3~5인 내외	- 사업계획의 필요성(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달성의 구체성 등) - 타당성(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 - 기대효과(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 기타(사업화 역량 등)

○ (평가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필요성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명확성(10) - 특구사업과의 연계성·지원 필요성(10)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10) -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10)	20
지원 내용의 타당성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10) - 신청금액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10) - 공급기업(관)의 과업 수행역량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10)	30
기대효과	- 제품·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사업화 가능성(10) - 매출·고용 창출 및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10)	20
기타	- 사업화 추진 역량, 사업 추진 의지, 제출자료의 충실성(10)	10
합계		100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서면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5.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신청 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 계	내 용	비 고
공고/접수 (연장) (9. 18 ~ 10.23)	· 지원사업 공고 · 관련 양식에 의거 이메일 신청 및 접수	기업 → 울산TP
↓		
선정평가/결과통보 (10.26 ~ 10.30)	· 대내외 유사·중복성 검토 · 신청 프로그램 평가(서면) ·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지원금 확정),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위원회
↓		
이의신청 접수 및 협약체결 (10.30 ~ 11.6)	· 선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전 협약체결	울산TP → 기업
↓		
사업수행 (11.6 ~)	· 협약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 사업수행	지원기업 및 공급기업(관)
↓		
완료/결과보고 (~ 11.30)	·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 울산TP
↓		
완료평가/결과통보 (12.1 ~ 12.11)	·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서면 완료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급	완료평가위원회 울산TP → 기업
↓		
기업지원금 지급 (~ 12.18)	· 완료 평가에 의한 기업 지원금 지급	울산TP → 공급기업(관)
↓		
성과/만족도 조사 (~ 12.24)	· 고용,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울산TP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접수기간) 2026. 9. 18.(금) ~ 10. 23.(금), 18:00
- ※ 당초 접수마감일 : 2026. 10. 9.(금) 18:00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메일 제출 (sujin5052@utp.or.kr)
 - － 접수 담당자 : 울산테크노파크 안수진 주임(052-219-8755)

7. 제출서류

- － (신청서 제공)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붙임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제2호	필수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제2호	필수
	중복지원 금지 및 사실확인 약약서	서식 제3호	필수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제4호	필수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서식 제5호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	필수
	공급기업(관)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공급기업(관) 견적서(세부 산출내역 포함) 1부	-	필수
	선정평가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제출서류 누락,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되며,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금액 및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암모니아 병커링 규제자유특구 실증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3.33% 이하만 가능(기업부담금 16.67% 이상)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の内容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
 -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 (제출서류) [붙임.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AI미래본부 부서 담당자 이메일(sujin5052@utp.or.kr)을 통하여 제출
-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지원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 (관련규정) 규제자유특구 운영 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접수 및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사업책임자	이동엽	AI미래본부	052-219-8652	dylee@utp.or.kr
사업담당자	안수진	AI미래본부	052-219-8755	sujin5052@utp.or.kr